



새롭게 흐르는 희망 달서

- 달서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재위탁 보고 -

# 제 안 설 명 서

2020. 8.



대구광역시 달서구  
<http://www.dalseo.daegu.kr>

[여성가족과]

- 달서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재위탁 보고 -

# 제 안 설 명 서

설 명 자: 여성가족과장

달서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위탁 운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재위탁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 제안이유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 다양한 통합서비스 지원과 가족의 안정성 강화 및 가족관계 증진, 다문화가족의 한국사회 조기적응 및 사회·경제적 자립 지원 등 종합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달서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 센터」의 위탁기간 만료일이 2020. 12. 31.자로 도래함에 따라,
-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민간위탁 운영자를 선정하여 운영하고자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제4조의2제2항 규정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하여 역량 있는 기관을 선정하여 재위탁 하고자 보고 드립니다.

## □ 그간의 운영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탁대상 시설인 달서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달서구 야외 음악당로13길 60(성당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연면적 1,105m<sup>2</sup>으로 지하1층, 지상3층으로 종사자 3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018년부터 이원화되어 있던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달서구건강 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통합하여,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된 가정복지회에서 3년간 위탁운영(2018. 1. 1.~2020. 12. 31.) 하고 있습니다.

- 달서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가족 교육, 가족문화사업, 가족상담, 아이돌봄지원, 취약·위기가족지원, 공동육아나눔터운영 등 을 통하여 가족의 안정성 강화 및 가족관계 증진에 기여하였으며,
- 다문화가족 대상 통합교육, 부모 및 자녀교육, 상담, 통·번역, 정보제공 및 역량강화지원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여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과 한국사회 조기적응, 사회·경제적 자립지원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향후계획과 운영주체 선정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 2020년 12월 31일 위탁 만료일 도래에 따라 2020년 10월 중 공개모집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하고, 2021. 1. 1.~2023. 12. 31.까지 3년간 달서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을 위탁할 예정입니다.
- 운영주체 선정방법과 관련하여 가족의 유형에 상관없이 한 곳에서 다양한 가족에 대한 보편적이고 포괄적 서비스제공 및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과 가족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가족 및 자녀 교육·상담, 통·번역 및 정보제공, 역량강화지원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민간위탁 운영자 선정을 위하여,
- 2020년 가족사업안내 지침에 따라 수탁자격 법인, 기관 등을 대상으로 신청접수 받아 수탁기관심사위원회의 공정한 심사를 거쳐 적합한 기관(단체)을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 다양한 가족의 안정적인 통합서비스 제공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달서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재위탁에 관련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달서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재위탁 보고

의 번	안 호
	0082060

제출일자: 2020. 8. 24.

제출자: 달서구청장  
(여성가족과장)

## 1. 제안이유

- 「달서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위탁기간이 2020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한 위탁 운영자를 선정하여 재위탁 운영코자,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제4조 의2제2항 규정에 따라 재위탁에 대하여 보고 함.

## 2. 주요내용

### 가. 대상시설: 달서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소재지	시설규모(㎡)	종사자	시설현황	운영보조금
대구 달서구 야외음악당로13길 60(성당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건물연면적: 1,105.37</li><li>• 부지면적: 668.8</li></ul>	38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지하1층, 공동육아나눔터, 문서고</li><li>- 1층: 사무실, 집단상담실</li><li>- 2층: 교육장, 상담실, 언어치료실</li><li>- 3층: 강당</li></ul>	4,383,577천원 정도

### 나. 위탁개요

- 위탁기간: 3년(2021. 1. 1.~2023. 12. 31.)
- 위탁내용: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합서비스 운영
  - 건강가정지원, 다문화가족지원, 취약위기가족지원
  - 아이돌봄지원,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등
- 위탁운영자 선정방법: 공개모집 후 수탁기관심사위원회 심의로 선정

#### 다. 민간위탁 추진근거

-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의 2
- 「대구광역시달서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조례」 제10조
- 「대구광역시달서구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17조
-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 라. 민간 재위탁 추진 필요성

-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은 가족의 안정성 강화 및 가족 관계 증진,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가족에 대한 보편적이고 포괄적 서비스 제공 목적으로 운영되어 특수한 전문 지식이 요구되며,
- 공개모집 후 재위탁 시 민간기관에 공정한 기회균등 및 경쟁성 강화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민간위탁 운영체 선정으로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음.

### 3. 참고사항

- 민간위탁 계획: 붙임 참조
- 관계법령: 붙임 참조
  -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의 2
  - 「대구광역시달서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조례」 제10조
  - 「대구광역시달서구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17조
  -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제4조 및 제4조의2

– 위탁기간(2018.1.1.~2020.12.31.) 만료에 따른 –

## 달서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추진 계획

2020. 12. 31일자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해 민간 행정참여 기회확대 및 공정성 확보와 투명한 절차에 따른 수탁기관 선정으로 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함.

### I 관련규정

-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의 2
- 「대구광역시달서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조례」 제10조
- 「대구광역시달서구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17조
-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 2020년 가족사업안내(여성가족부)

### II 추진방향

- 위탁법인(단체) 공개모집을 통한 법인 간 경쟁력 확보로 위탁환경 개선
- 합리적인 선정기준과 객관적 절차 운영으로 최적의 수탁법인(단체) 선정
- 수탁기관심사위원회 구성으로 심의내용의 질적 수준 제고

### III 위탁개요

- 시 설 명: 달서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소재지	시설규모(㎡)	종사자	시설현황
대구 달서구 야외음악당로13길 60(성당동)	- 건물연면적: 1,105.37 - 부지면적: 668.8	38명	- 지하1층: 공동육아나눔터, 문서고 - 1층: 사무실, 집단상담실 - 2층: 교육장, 상담실, 언어치료실 - 3층: 강당

- 위탁기간: 2021.1.1.~2023.12.31.(3년)
- 위탁내용: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합서비스 운영
- 사업비

(단위: 천원)

사업명	예산액	비고
계	4,383,577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기:시:구 = 50:25:25)	479,800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추가지원(구비: 100)	50,500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 수당(시비: 100)	46,080	
아이돌봄 지원사업(국: 시: 구 = 70:15:15)	2,859,100	
공동육아나눔터 운영(기:시:구 = 50:25:25)	130,260	3개소
취약위기가족지원(국 : 시 = 50 : 50)	140,000	
다문화가족지원(기: 262,845, 시: 177,819, 구: 237,173)	677,837	

※ 예산은 변경될 수 있음

- 선정방법: 공개모집 후 수탁기관심사위원회 심사로 선정
- 추진일정

구분	추진기간	추진내용	비고
성과평가	8월 중	- 성과평가계획 수립	
	9월 중	- 성과평가단 구성 및 운영 - 성과평가 결과 구 홈페이지 공개	
사전보고	8월 중	- 제안설명서 작성	제273회 임시회: 9.1.~9.9.
	9월 중	- 달서구의회 사전보고	
위탁모집 공고·접수	9. 21. ~ 10. 5. (10.8. ~ 10. 14.)	- 위탁모집 공고 (1개소 신청시 재공고)	15일간 (7일간)
	10. 5. ~ 10. 7. (10.14. ~ 10. 16.)	- 신청서 접수	3일간
수탁기관 심사위원회 구성·운영	10. 19. ~ 10. 23.	- 수탁기관심사위원회 구성	9인 이내
	10. 26. ~ 11. 4.	- 심사 준비 및 자료 검토	
	11월 중	- 수탁기관심사위원회 개최 및 심사	
계약체결	12월 중	- 위탁운영계약 체결 - 계약내용 공증 - 위탁사실 공고	

※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IV

## 세부추진계획

### □ 위탁사업 성과평가

- 추진근거: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제13조
- 평가시기: 2020. 9월 중
- 평가대상기간: 2018. 1. 1. ~ 2019. 12. 31.
- 평가대상기관: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위탁기관: 사회복지법인 가정복지회)
- 평가단 구성 및 운영
  - 구 성: 학계·민간전문가, 공무원 등 포함 5인 이내
  - 승낙서 징구로 위촉 갈음, 평가 후 자동해산
- 평가방법
  -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성과평가지표에 따라 평가  
※ 2020년 여성가족부 평가계획 평가지표에 준하여 지표 작성
  - 평가자 서면평가 후 평균값 산출
  - 평가항목: 사업계획(15점), 사업여건(10점), 사업운영(25점)(가점 2점), 사업성과 (50점)
- 평가결과조치
  - 평가결과 60점 미만일 경우, 재위탁 공모 時 감점 조치
  - 우수사례, 개선사항 등 평가의견은 향후 위탁운영에 반영

### □ 위탁 운영기관 선정 개요

- 추진시기: 2020. 9.~11월
- 선정방법: 공개모집 후 수탁기관심사위원회 심사로 선정
- 선정기준: 적격성, 사업수행 전문성, 사업계획 적정성, 센터장의 전문성 등 종합적 평가
- 위탁조건
  - 수탁자는 관련 법령, 운영지침, 위탁계약서 등 관련 규정이 정하는 제반 사항과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구에서 지원하는 보조금 이외의 추가비용은 수탁자 부담으로 함
- 센터장은 반드시 상근하여야 하며,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위탁운영기관이 임면
- 센터장을 제외한 종사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고용 승계하여야 함

## ○ 신청자격

- 신청자격: 공고일 현재 대구광역시 내 사무소를 두고 있는
  - 「민법」 제32조에 따른 건강가정사업, 다문화가족지원 관련 비영리법인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 「공익법인의 설립 ·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건강가정사업, 다문화가족지원 관련 비영리단체
- 신청 제외대상: 공고일 현재
  - 법인대표 및 임원이 사회복지사업법 제19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법인
  - 5년 이내 관련법규 위반으로 위탁취소 및 위탁해지 처분을 받은 법인
  - 영리 및 생계의 방편으로 운영 또는 종교적인 목적으로 운영될 우려가 있는 법인
  - 주사무소와 상근인력이 없는 등 실체가 없는 법인
  - 공신력, 도덕성과 관련하여 민·형사상 소송 등 분쟁이 진행 중인 법인
  - 타인의 명의로 위탁운영하려는 자

## ○ 공고 및 신청서 접수

- 공고기간: 2020. 9. 21.~10. 5.(1개소 신청 시 재공고)
- 공고방법: 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 공고내용: 신청자격, 위탁내용, 선정기준, 신청서류 등
- 접수기간: 2020. 10. 5.~10. 7.
- 접수장소: 달서구청 여성가족과(우편접수 불가)
- 제출서류: 위탁운영 신청서

## ○ 수탁기관심사위원회 구성·운영

### ▪ 위원회 구성

- 학계·민간 전문가, 공무원 등 포함 9인 이내

※ 위원: 공무원 3(건가다가센터 담당부서장 당연직), 구의원 1, 학계·민간 전문가 등 5

- 신청접수 마감 후 위탁운영 신청법인과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으로 구성

-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 승낙서 징구로 위촉 갈음, 선정심사 후 자동해산

### ▪ 위원회 개최

- 일시 및 장소: 2020. 11월 초(예정) / 구청 회의실

- 참석대상: 심사위원, 위탁 신청기관 관계자

- 내용: 센터 재위탁 심사

## ○ 위원회 심사 및 결정

### ▪ 심사방법: 수탁기관심사위원회 심사

- 사전검토: 서류검토(회의개최 3일 전 심사위원에게 자료송부)

- 심사당일: 심사위원회 집합심사(응모기관 프리젠테이션 진행)

- 최고 및 최저 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위원의 점수 합산 평균을 기준

- 신청기관이 2개 이상: 평점이 높은 기관으로 결정

- 신청기관이 1개: 평점 70점 이상시 결정, 70점 미만시 원만한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재 공모

### ▪ 심사결과 공개: 2020. 11월(예정)

- 공개방법: 구 홈페이지 게재 및 선정된 자에 한하여 개별통지

### ▪ 심사항목 : 4개 분야 12개 항목(100점 만점)

평 가 분 야	평 가 항 목	비 고
수탁법인의 적격성	사업수행 적합성, 공신력, 사업경력, 보유자산	30점
사업수행 전문성	가족사업 실적, 지역연계 실적, 공모사업 및 수상실적	30점
사업계획의 적정성	사업운영 계획, 재정운영 계획, 재정확충 방안	30점
운영자의 전문성	센터장 및 직원 자격의 적정성, 사업제안 설명 등	10점

## ○ 위탁계약 체결

- 일 시: 2020. 12월(예정)
- 계약기간: 2021. 1. 1. ~ 2023. 12. 31.(3년)
- 계약내용
  - 필수사항: 대상, 계약기간, 대상시설 및 업무내용, 수탁자의 의무·준수, 시설관리, 안전관리, 종사자 고용승계, 지도감독, 계약해지 등
  - 기타사항: 위탁운영기관의 손해배상보험 가입 의무화
- 계약서 2부 작성 후 양자 간 서명·날인하여 공증

V

## 행정사항

- 민간위탁사업 성과평가: 2020. 9월
- 재위탁 달서구의회 사전 보고: 2020. 9월(제273회 임시회: 9. 1.~9. 9.)
- 위탁기관모집 공고 및 접수: 2020. 9.~10월
- 수탁기관심사위원회 구성 및 개최: 2020. 10.~11월
- 위탁운영 계약체결 및 공증: 2020. 12월
- 위탁기간동안 평가 및 지도·감독 철저

# 【 관 계 법령 】

## □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설치)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정문제의 예방·상담 및 치료, 건강가정의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가족문화운동의 전개, 가정관련 정보 및 자료제공 등을 위하여 건강가정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1.9.15.>

⑤ 센터의 운영은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 □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

제6조(건강가정지원센터의 위탁운영)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기관에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6.6.7.>

1.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건강가정사업 관련 비영리법인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3.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4.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5.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건강가정사업 관련 비영리단체
6.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7. 그 밖에 여성가족부장관이 건강가정사업을 위한 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지원센터의 설치·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아닌 자가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 □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

제12조의2(지원센터의 위탁 대상 및 절차 등)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지원센터의 설치·운영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2.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비영리법인
  3.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같은 법을 적용받는 공익법인
  4.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비영리단체
  5.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6. 그 밖에 여성가족부장관이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법인·단체
-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지원센터의 설치·운영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위탁 내용 및 절차를 고시하여 지원센터의 설치·운영을 위탁받으려는 자의 신청을 받은 후 신청자의 사업수행 능력, 재정적 능력, 활동 실적, 신뢰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탁받을 자를 선정하고 여성 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내용이 포함된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 대구광역시달서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조례

제10조(운영) ① 구청장은 센터의 목적과 사업수행에 적합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6. 7. 13)

1. 건강가정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등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 대구광역시달서구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17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정) ① 구청장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에 필요한 전문 인력과 시설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를 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지정하고, 제7조제1항 및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 □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 등) ①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소관사무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 5. 22.)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의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사무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때에 민간위탁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5. 22.)

③ <삭제 2015. 2. 23.>

④ 구청장은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 5. 22.)

제4조의 2(의회동의 및 보고) ① 구청장은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할 때 위임사무는 미리 해당 사무를 위임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조례에서 민간위탁 사무로 정한 경우
2. 수탁기간 1년 이하의 일회성 사무
3. 청소, 방호 등 연간 반복적 사무
4. 기타 연간 위탁금액이 3억원 이하의 사무로서 구의회에 보고한 경우

② 구청장이 자치사무를 재위탁 또는 재계약하는 때에는 사전에 의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재위탁 또는 재계약 여부 등을 사전에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한 경우에는 구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

[신설 2019. 5. 21.]